법화경의 성립과 구성에 관한 고찰

聖雨(徐濟烈)
布敎社會學科 敎授

본 논문은 법화경의 성립과 구성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였다. 먼저 한역경전의 사례를 토대로 법화경이전의 대승경전과 사상, 법화제본의 종류, 법화제본의 성립시기를 살펴보면서 법화제본 가운데 묘법화의 범본사본이 서기 150년경에 성립된 원형법화에 가까운 최고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법화제본의 목차구성을 각각 대교하고, 내용구성의 검토를 통하여 법화경의 근본사상인 일승사상이 법화경 전품의 일관된 핵심사상이며, 이러한 일승사상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이행도인 불탑신앙과 경전신앙의 두 축에 의하여 의존·전개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것이 본 논문의 성과라고 생각된다.

법화경의 성립과 구성에 관한 고찰

聖雨(徐濬烈)
布敎社會學科 敎授

1. 들어가는 말
2. 법화경의 성립
 1)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
 2)법화 제본의 성립
 3)법화 제본의 성립 시기
3. 법화경의 구성
 1)목차의 구성
 2)내용의 구성
  (1)불탑 신앙
  (2)경권 신앙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법화경(saddharmapuṇḍarika-sūtra)은 일반적으로 대승과 소승의 대립을 지양하는 동시에 그 둘을 하나 즉 일승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을 띠고 저술된 초기 대승경전으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이런 통일 경전의 특징이 있는 법화경의 성립과 구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법화경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많은 지면과 긴 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경전이 그러하듯 법화경도 전체 품이 한꺼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증보를 거듭한 끝에 현존하는 법화경의 형태로 완성되었으며, 범본 법화경의 사본 역시 여러 종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화경의 성립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 법화 제본의 성립과 성립 시기 순서로 고찰

해볼 수밖에 없다.

먼저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법화경이 최초로 번역된 축법호(竺法護 239~316) 이전에 번역된 것들을 근거로 하고, 부차적으로 법화경의 핵심사상이 일승사상이라는 점과 법화경의 서품 등에 나타난 설들을 중심으로 법화경 이전에 인도에 산재해 있었던 대승경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법화 제본의 성립에 관해서 현존하는 한역본들과 인도 각처에서 발굴된 범본 사본들의 관계를 통해서 라집이 번역한 묘법화의 원본이 최고본이 되는 근거를 지적하면서 법화 제본의 성립 시기를 대략 추정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성립된 법화경의 구성에 관해서는 목차의 구성과 내용의 구성으로 크게 나누어, 범본과 티베트본, 그리고 한역 3본에 나타난 목차의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점을 알아보고, 끝으로 내용의 구성에 관해서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해명하고, 법화경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법화경의 성립

1)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

법화경이 성립되기 전에도 이미 인도에서는 많은 대승경전들이 결집되었다는 사실은 법화경 서품[1]에서도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승경전들이 인도에 있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축법호(239~316)에 의해 太康 7년(286)에 최초로 『正法華經』이 번역되어 나왔고, 축법호 이전에는 법화경이 번역되었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축법호 이전에 번역된 한역 경전들을 근거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

축법호 이전에는 안식국의 승려 안세고(後漢, 桓帝代, 146~167)가 낙양에 와서 34부 40권[2]의 소승경전을 번역했다고 한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역서	『安般守意經』, 『陰持入經』, 『禪行法想經』, 『大道地經』 等
아함 역서	『人本欲生經』, 『十報經』, 『普法義經』, 『四諦經』, 『七處三觀經』, 『八正道經』, 『轉法輪經』 等
아비담 역서	阿毘曇五法經, 阿毘曇九十八結經 等

1)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2b : 爾時世尊. 四衆圍繞. 供養恭敬尊重讚歎. 爲諸菩薩說大乘經. 名無量義教菩薩法佛所護念

2) 『出三藏記集』 卷2, 大正藏, pp.5a~6b.

반면에 월지국 승려 지루가참(後漢, 桓帝~靈帝代, 146~189)은 낙양에 와서 光和(178~183)과 中平(184~188) 사이에 13부27권[3]의 대승경전을 번역했다.

그리고 支曜, 嚴佛調, 安賢, 康孟詳, 維紙 등을 거쳐, 지루가참보다 약 50년 뒤에 지겸이 吳의 黃武 初(222~229)부터 建興 中(252~253) 사이에 36부 48권[4]의 경전을 번역했으며, 이어서 康僧會와 白延의 번역이 있었다.

물론 이들이 번역한 경전들은 모두 일시에 완성된 경전들이 아니었으므로 인도에서 대승경전의 성립은 소경의 형태에서 점차 증보를 거듭하여 하나의 완성된 대승경전으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루가참의 역경에서 축법호의 역경에 이르기까지는 약 100년 이상 연대 차이가 있으므로, 법화경 이전에도 인도에는 단편적이나마 많은 대승경전들이 완성된 소경의 형태로 산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루가참이 번역해서 펴낸 경전 외에도 인도에는 더 오래된 대승경전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루가참에서부터 지겸까지 한역을 기준으로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들을 찾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지루가참 한역서	『道行般若經』 10卷, 『首楞嚴三昧經』 2卷(闕), 『般舟三昧經』 1卷, 『屯眞陀羅經』 2卷(闕), 『方等部古品曰遺日說般若經』(闕), 『阿闍世王經』 2卷, 『寶積經』 1卷, 『問署經』 1卷, 『胡般泥洹經』 1卷(闕), 『兜沙經』 1卷 『阿閦佛國經』 1卷, 『孛本經』 2卷(闕), 『內藏百品經』 2卷 等
안현 · 엄불조 한역서	『法境經』
지겸 한역서	『菩薩本業經』 1卷, 『維摩詰經』 2卷, 『慧印經』 1卷, 『阿彌陀經』 2卷, 『大明度經』 4卷, 『首楞嚴經』 2卷 等

그러므로 법화경 이전에 이미 인도에는 반야경이나 아미타불과 아촉불, 삼매수행과 관련된 대승경전, 화엄십지설이나 문수보살에 관련된 교리, 그리고 『보적경』이나 『유마경』 등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법화경의 핵심사상이 일승사상이라는 점과 법화경 「서품」 제1의 설명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법화경은 이미 삼승교가 고착된 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일승사상을 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법화경 이전에 이미 대승 독자의 교리나 수행 계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삼승교의 차별을 인정하고 이승의 불성불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이러한 대승불교의 교리를 삼승 방편설로 간주하고, 일승을 개현함으로

3) 『出三藏記集』 卷2, 大正藏 55, p.6에는 14部로 記述되어 있지만, 『方等部古品曰遺日說般若經(闕)』과 『寶積經(一名摩尼寶)』은 同一本이므로 總13部이다. 『高僧傳』 卷1, 大正藏 卷50, p.324b

4) 『出三藏記集』 卷2, 大正藏 55, pp.6c~7a.

써 대승과 소승을 통렬히 비판하고 이승의 작불을 설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법화경은 이승의 작불을 인정하지 않는 『반야경』이나 소부의 『화엄경』, 그리고 『유마경』 등에 대항하여 일승사상을 역설한 것이므로 이들 대승경전들은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들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법화경 서품 제1에 대고중으로 아사세왕[5]이 나타나 있고, 부처의 백호광명으로 비추어진 동방의 일만 팔천 국토는 동방 아촉불의 국토를 상징하고 있다. 화성 유품 제7에도 동방의 아촉불[6]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아사세왕경』이나 『아촉불국경』도 법화경 이전에 이미 인도에 존재했다고 보아도 좋다. 또한 법화경 서품 제1에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의 상수인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의 문답에 의해 법화경의 서곡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화경 이전에 이미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의 구분이 분명했고, 보살 독자의 수행 계위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륵보살과 관련 깊은 반야경류, 문수보살과 관계 깊은 『화엄경』 일부와 『욱가장자경』과 『수능엄경』 등도 이미 법화경 이전의 대승경전이라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더욱이 『수능엄삼매경』에 의하면,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세에 수능엄삼매를 성취한 보살로서 설하고 있으며, 『욱가장자경』에서 미륵보살은 욱가장자 등 재가 보살들의 머리를 삭발하여 출가시키고 있으므로 『수능엄삼매경』이나 『욱가장자경』 등도 이미 법화경 이전에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에서 법화경은 이들 대승경전보다는 나중에 성립된 것만은 분명하다.

2)법화 제본의 성립

법화경의 한역 제본으로는 다음과 같이 현존하는 3종의 완역본과 1종의 소역본, 그리고 2종의 흠역본 등이 있다.

① 現存 完譯 三本.

竺法護 譯 : 『正法華經』 10卷 27品(太康 7년 ; A.D. 286)[7]

鳩摩羅什 譯 : 『妙法蓮華經』 7卷 或 8卷 28品(弘始 7년 ; A.D. 405)[8]

闍那掘多 · 達摩笈多共譯 : 『添品妙法蓮華經』 7卷 27品(仁壽 원년 ; A.D. 601)[9]

5)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2b : 韋提希子阿闍世王. 與若干百千眷屬俱.

6) 『妙法蓮華經』 卷 第3, 大正藏 9, p.25b : ....現在說法有無量百千萬億菩薩聲聞. 以爲眷屬. 其二沙彌東方作佛. 一名阿閦在歡喜國.

7) 大正藏 卷9. pp.63a~134b.

8) 위의 책, 卷9. pp.1c~62b.

9) 위의 책, 卷9. pp.134b~196a.

② 現存 小譯 一本.

失譯 : 『薩曇分陀利經』 1券(西晉代 ; A.D. 265~316)[10]

③ 欠譯 二本.

支謙 譯: 『佛以三車喚經』 1卷[11]

支彊梁接(正無畏) 譯 : 『法華三昧經』 6卷(魏代)[12]

이상의 한역 법화 제본 가운데 현존 소역 1본은 축법호 번역 이후에 번역되었으나, 내용이나 구성이 단순하고 소박하므로 『정법화경』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견보탑품의 부분역으로 추정된다. 흠역 2본은 현재 학계에서 한역의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이 최고의 한역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축법호 번역의 『정법화경』은 번역이 난해하고 음독이 난잡한 것이 단점이다. 아마 축법호가 정법화의 범본 사본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닌가 싶다.

반면에 『정법화경』보다 100년 뒤에 한역된 『묘법연화경』은 문장도 간결하고 음률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것은 묘법화의 특징인 동시에 라집의 탁월한 번역 능력을 말해준다. 라집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법화의 범본을 자유자재로 의역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묘법화의 출현 이후 법화경에 관한 중국의 논서 등이나 한역본에서 축법호 번역의 정법화보다 라집이 번역한 묘법화를 주로 인용하고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반증된다.

예컨대 『첨품법화경』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첨품법화경』은 정법화의 원본과 동일한 다라엽본(多羅葉本)이며, 묘법화의 원본은 라집의 모국어인 구자문(龜玆文)을 닮고 있다.[13]

이처럼 첨품법화의 원본은 정법화의 원본과 동일하고 묘법화의 원본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첨품법화는 정법화보다 오히려 묘법화의 문구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법화경의 원형은 하나이지만, 그 사본이나 역본들은 여러 종류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인도 전역에 걸쳐서 부분적이나마 범본 법화경의 사본들이 이미 다량으로 발굴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화경의 사본이나 역본에 관해서는 폭 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서 · 북인도에서는 법화 제본의 모태가 되는 원형 법화경이 성립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원형 법화경은 후6품을 제외한 서품에서 여래신력품 다음에 곧바로 촉루품(제바달다품은 뒤에 삽입된 것이므로 제외)으로 연결되는 총 21품을 말한다. 이 원형 법화의 성립 과정 또한

10) 위의 책, 卷9. pp.197a~198a.

11) 『歷代三寶紀』 卷 第5, 大正藏 49. pp.58c.

12) 『歷代三寶紀』 卷 第5, 위의 책, pp.56c.

13) 大正藏 9, pp.134c. 里見岸雄 著, 『法華經の研究』, 平樂寺, 大正 13년 8月 25日, pp.40 참조.

매우 복잡하다.

먼저 전반 부분의 방편품과 비유품, 후반 부분의 견보탑품과 권지품이 성립되고, 다음에 방편품과 비유품을 중심으로 거듭 증보되어 수학무학인기품까지 원시 8품의 전반 부분이 성립되었다. 이어서 견보탑품과 권지품에서 증보된 법사품을 비롯하여 여래신력품까지 후반 부분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후로 서품과 촉루품이 첨부되어 원형 법화경이 성립되고, 원형 법화경이 성립된 뒤에도 법화경의 유통과 함께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후6품이 부가되면서 촉루품이 맨 뒤로 이동하여 비로소 현존하는 정법화나 첨품법화의 원본, 또는 범본 사본들이나 티베트본 등과 같은 법화 제본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한 성립 순서별로 방편품을 비롯한 원시 8품을 제1류의 법화경, 법사품에서 촉루품까지를 제2류의 법화경, 후6품을 제3류의 법화경으로 보고, 그 성립 시기를 각각 50년경, 100년경, 150년경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아무튼 원형법화에서 파생된 법화제본들을 간단히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원형 법화경에서 파생된 법화경의 제본들은 여러 종류이지만, 원형 법화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법화 제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게송 부분에 있어서 증보의 차이나 목차 구성에 있어서 제바달다품을 견보탑품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개의 목차로 독립시키고 있는가 하는 차이와 후 6품의 목차 구성만 제외한다면, 서품에서 촉루품까지 총 21품으로 구성된 법화 제본은 원형 법화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화 제본은 게송의 증보나 목차 구성이 약간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그것은 한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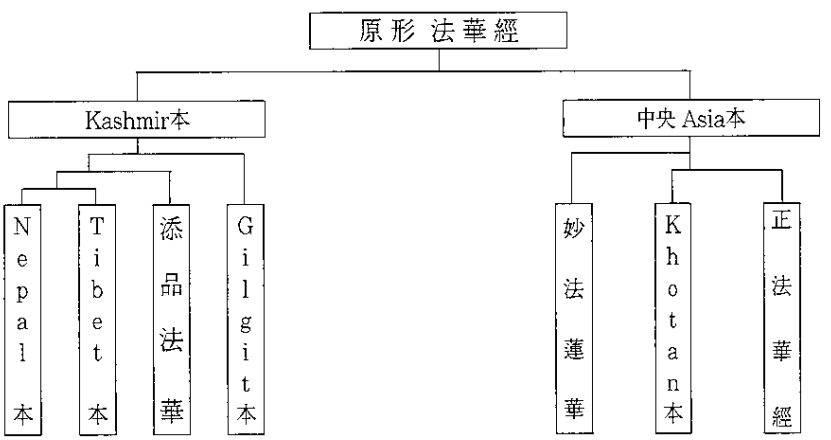

14) 坂本辛男, 岩本 裕譯注, 『法華經(上)』, 岩波書店, 1991년 6月 26日, pp.411~421에는 法華經의 梵語 諸本에 關하여 詳述되어 있다.

본이나 H.Kern과 B.Nanjio에 의해 편집된 범본,[15] 그리고 티베트본[16]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H.Kern과 B.Nanjio에 의해 편집된 범본이나 티베트본은 첨품법화의 목차 구성과 완전히 동일하며, 내용도 한역 3본과 거의 일치하므로 H.Kern과 B.Nanjio본이나 티베트본은 첨품법화의 원본이거나 아니면 첨품법화와 같은 시대에 저작된 사본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첨품법화의 원본을 비롯한 H.Kern과 B.Nanjio본이나 티베트본 등의 성립은 정법화나 묘법화의 원본보다 훨씬 새로운 부류로 판명된다. 더욱이 첨품법화는 서문에서 축법호 번역보다 라집 번역이 빼고 생략한 것이 많다는 사례를 지적하면서도 라집 번역의 문장들을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라집의 번역이 탁월한 점도 있겠지만, 묘법화의 원본이 정법화의 원본보다 더 고본(古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3)법화 제본의 성립 시기

현재까지 라집이 번역한 묘법화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라집 번역의 묘법화가 최고본이 되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품에 등장하는 총 대고중 수는 묘법화가 가장 적다는 점이다.[17] 모든 경전의 경우에 거의 동일하나, 특히 법화경의 경우는 내용이 수차에 걸쳐 거듭 증보되었기 때문에 총 대고중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바로 원형 법화에 가깝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범본의 대고중 수는 성문 27인, 비구니 2인, 보살중 41인 등 총 70인이며, 정법화는 성문 21인, 보살중 24인 등 총 45인이다. 반면에 묘법화는 성문 21인, 비구니 2인, 보살중 18인 등 총 41인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서품에 나타난 대고중 수는 범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법화이며, 묘법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묘법화의 원본이 최고본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한역 3본 중 총 게송 수에서도 묘법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 있다. 상공(祥公)의 『法華傳記』 1권에 의하면,[18] 정법화가 6천5백 게, 첨품법화가 6천2백 게, 묘법화가 가장 적은 6천 게이다. 이것 또한 게송 수의 증보가 가장 적은 묘법화의 원본이 최고본에 가까운 것임

15) Saddharmapuṇḍarika edited by H.Kern and B.Nanjio(Bibliotheca Buddhica Ⅹ), St.-Petersbourg 1908~1912; reprinted Osnabr ck 1970, Tokyo 1977.

16) Dam paḥi chos pad ma dkar po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 translated and revised by Sūrendrabodhi and Ye śes sde(the Tibetan Tripiṭaka. Peking edition, edited by D.T.Suzuki, vol.30, Tokyo/Koyto 1955.)

17) 布施浩岳 著, 『法華經成立史』, 大東出版史, 昭和 9년, pp.200~206 참조

18) 里見岸雄 著, 『法華經の研究』, 平樂寺書店, 大正 13年, p.40 참조. 여기에는 正無畏 譯이 5千 偈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妙法華의 偈頌이 가장 적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法華三昧經』은 欠譯이므로 제외했다.

을 의미한다. 더욱이 『첨품법화경』의 서문에 의하면,[19] 축법호 번역이 빠트린 곳은 보문품의 게송 한 곳이지만, 라집 번역이 빠트린 곳은 약초유품의 후반과 부루나(오백제자 수기품) 및 법사품의 초, 제바달다품과 보문품의 게라고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정법화보다 약 100년 이상이나 한역이 늦은 묘법화가 정법화보다 빠뜨린 바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정법화의 원본이 묘법화의 원본보다 더 새로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길을 거쳐 구자국에 전해진 묘법화 원본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그대로 구자국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묘법화의 원본보다 새로운 형태를 갖춘 정법화 원본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길을 거쳐 돈황에 도달했고, 비로소 축법호에 의해 번역된 게 아닌가 싶다.[20] 바로 첨품법화의 서문에 "敦煌沙門竺法護"[21] 라고 적혀 있는 점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축법호가 번역한 뒤에 구자국에서 묘법화의 원본을 갖고 중국에 들어온 라집이 묘법화를 한역한 것이므로 축법호 역보다 더 빼고 생략한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한역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라집이 최초에 묘법화를 번역할 때, 견보탑품만 있었고 제바달다품이 없었다는 점이다. 축도생(竺道生, ?~434년)의 『法華經疏』 권하[22]에도 제바달다품의 주석은 보이지 않고, 역시 법운(法雲, 476~529)의 『法華經義記』 권7[23]이나 성덕 태자(聖德太子, 574~622)의 『法華義疏』 권4[24]에도 견보탑품에 대한 주석만 있으며, 제바달다품에 대한 주석은 없다. 다만 천태(538~597)의 『法華文句』 권 8하[25]에는 정림사의 법헌(法獻)이 우전국에서 입수한 제바달다품의 범본을 번역하여 권지품 앞에 삽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법헌이 法意와 함께 영명 8년(490)에 번역한 『妙法蓮華經』 「提婆達多品」 第12, 1권[26]으로 있었던 것이 520년 전후를 중심으로 묘법화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27] 반면에, 정법화에는 제바달다품이 칠보탑품의 후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바달다품과 칠보탑품은 내용면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제바달다품이 칠보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은 정법화의 원본이 27품까지 성립된 직

19) 『添品法華經』 序, 大正藏 9, p.134c. 布施浩岳 著, 『法華經成立史』, pp.16~17에서는 梵本과 正法華, 妙法華, 添品法華의 各品을 圖表를 作成하여, 이들에 對한 增補의 有無를 詳述하면서 增補가 發見되지 않는 妙法華가 最古本임을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大藏經에 있는 妙法華는 「藥草喩品」의 後半만 闕한 狀態로 나타나 있을 뿐, 그 外의 部分은 모두 補充되어 있다

20) 塚本啓祥著, 『法華經の成立と背景』, 交成出版社, 昭和 63년 3月 17日, p.482 참조.

21) 『添品法華經序』, 大正藏 9. p.134c.

22) 『法華經疏』 卷下, 續藏經 150, pp.408~409.

23) 『法華經義記』 卷7, 大正藏 33, pp.661~662. 「敦煌本法華經義記」 第3, 大正藏 85, p.170 以下 參照.

24) 『法華義疏』 卷4. 大正藏 56. pp.116c~117b.

25) 『妙法蓮華經 文句』 卷 8下, 大正藏 34, p.114c. 「法華文句記」 卷8之4, 大正藏 34, p.312b : 釋提婆達多品… 上定林寺釋法獻於于闐 國. 得梵本來. 瓦官沙門釋法意. 齊永明八年十二月譯訖.

26) 『出三藏記集』 卷2, 大正藏 55, p.13b~c. 『開元釋敎錄』 卷6, 大正藏 55, p.536a.

27) 平川彰著, 『初期大乘の敎理と敎團』 p.94 참조.

후에 제바달다품이 칠보탑품에 증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는 정법화의 원본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제바달다품이 없는 묘법화의 원본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묘법화의 촉루품은 후 6품 전에 있는 반면, H.Kern and B.Nanjio본이나 티베트본, 그리고 첨품법화나 정법화 등의 촉루품은 모두 동일하게 후 6품 뒤에 나오고 있다. 사실 법화경은 후 6품 전에 완성된 하나의 경의 체제로서 이미 종결되고 있다. 그런 뒤에 법화경은 다시 후 6품이 증보된 것이다.

이처럼 법화경은 경의 체제가 이미 완성된 뒤에 후 6품이 증보되었으므로, 정법화는 후 6품의 존재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 촉루품을 후 6품의 뒤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촉루품이 후 6품 전에 있는 라집 번역의 묘법화가 최고본이 되는 셈이며, 촉루품이 맨 뒤로 가 있는 축법호 번역의 정법화가 고본으로 판정된다. 또한 첨품법화를 비롯한 H.Kern and B.Nanjio본이나 티베트본은 이들보다도 새로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용수(A.D.150~250)의 『대지도론』에서는 후 6품을 포함한 법화경의 전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 6품을 제외한 원형 법화의 성립을 100년경으로 산정할 때, 원시 8품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서기 50년경, 원형 법화에 가까운 라집 역의 범본은 서기 150년경, 정법화의 범본은 서기 200년경, 그리고 첨품법화의 범본은 500년경[28]에 성립되었다고 추정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3. 법화경의 구성

1) 목차의 구성

법화 제본들 가운데 H.Kern and B.Nanjio본이나 티베트본, 그리고 『첨품법화경』, 이 3본은 서품에서 촉루품까지 총 27품으로서 목차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물론, H.Kern and B.Nanjio본은 B.Nanjio에 의해 여러 종류의 범본들이 수집되어 이들을 대교한 후, 다시 H.Kern에게 넘겨져 1908~1912년에 걸쳐 법화경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개정 출판된 이래, 현재 범본 법화경의 원본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티베트본이나 첨품법화의 목차구성과 동일하므로 법화경의 목차 구성을 연구하는 데는 한역 3본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8) S.Watanabe, Saddharmapuṇḍarika Manuscripts found in Part two, Tokyo, 1975. Introduction p.11에서는 現存 길기트본의 成立을 6世紀로 推定하고 있으므로 네팔본이나 티베트본 等은 그 後에 成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역 3본은 목차 구성이 정법화나 첨품법화와 같이 제바달다품을 견보탑품에 삽입시키거나, 아니면 묘법화처럼 제바달다품과 견보탑품을 각각 독립시키는 것만 다를 뿐, 서품에서부터 여래신력품까지 총 20품(묘법화의 제바달다품은 제외)까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래신력품까지 한역 3본의 목차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래신력품 이후이다. 여래신력품 이후에는 한역 3본의 목차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묘법화는 여래신력품 이후에 곧 바로 촉루품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전이 여기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런데 묘법화의 원본은 다시 원문 내용과 다른 후 6품이 차례로 증보되었던 것이며, 라집의 번역이 있은 뒤에 법헌과 법의에 의해 490년경에 번역된 「제바달다품」 제12, 1권이 520년 전후에 견보탑품 제11의 뒤로 삽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묘법화의 목차 구성은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법화는 후 6품이 성립되고 나서 촉루품 제21을 후 6품 이후로 이동시켰던 것이므로 정법화는 묘법화의 목차 구성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제바달다품을 묘법화처럼 독립시키지 않고 칠보탑품에 포함하거나 촉루품의 위치를 후 6품 이후로 이동시킨 것만 다르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칠보탑품 가운데 제바달다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악인의 성불이나 여성의 성불을 설한 제바달다품이 법화경에 포함한 것은 당연할지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서로 다른 제바달다품을 칠보탑품에 포함시킨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정법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이미 일연[29] 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법화가 촉루품을 후 6품 이후로 이동시킨 이유는 후 6품 이전에 촉루품을 둔다면, 그것으로 경이 완전히 종결되므로 후 6품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촉루품을 후6품 이후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첨품법화는 서품 제1에서 촉루품 제27까지 정법화의 목차와 동일하지만, 정법화의 24품인 총지품(묘법화의 다라니품)을 여래신력품 제20 뒤로 이동시켜 다라니품 제21로 목차 구성을 변경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첨품법화경』이 여래신력품 제20뒤로 다라니품을 이동시킨 것에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여래신력품에는 여래의 비밀 사상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래신력품에는 "여래의 일체소유법과 자재신력, 그리고 여래 일체비요의 장(sarva-buddha rahasya)이나 심심한 일까지도 법화경 가운데 선시현설했다."[30]라고 설해져 있다. 그런데 다라니품은 비밀 사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구밀을 설하고 있으므로 비밀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9) 里見安雄 著, 『法華經の研究』 p.43에는 日蓮 大師가 妙法華와 正法華를 比較해서 正法華의 失에 關한 23箇條를 記述하고 있는데, 바로 13箇條에서 提婆品을 寶塔品에 包含한 誤가 指摘되고 있다.

30) 『妙法蓮華經』 卷6, 大正藏 9, p.52a : 如來一切所有之法. 如來一切自在神力. 如來一切秘要之藏. 如來一切甚深之事. 皆於此經宣示顯說』. Wongihara and Tsuchida本, p.330 22行. 橫超慧日 編著, 『法華思想』, 平樂寺書店. 1975년 8月 1日, p.161 참조.

여래신력품 뒤로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다라니품을 정법화나 묘법화처럼 관세음보살보문품과 묘장엄왕본사품 사이에 그냥 놓아둘 경우에 다라니품만 고립되고 만다. 더욱이 다라니품에는 약왕보살이 대고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라니품을 여래신력품과 약왕보살본사품 사이로 이동시키면 다라니품이 고립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래신력품과 약왕보살본사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주는 일석이조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라니품을 여래신력품 뒤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에서 한역 3본의 목차 구성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해보았는데, 이에 대한 도표는 생략하기로 하고,[31]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2)내용의 구성

천태 대사는 『묘법연화경』 총 28품을 각각 적문 14품과 본문 14품으로 분류하고, 법화경의 내용은 이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도생은 『묘법연화경소』 상권에서 법화경을 인과의 두 문으로 분류했다. 서품 1에서 안락행품 13까지 "三因을 밝혀 一因으로 삼는다"고 했으며, 종지용출품 14에서 촉루품 21까지 "三果를 분별하여 一果로 삼는다"고 기술했고, 약왕보살본사품 22에서 보현보살권발품 27까지 후 6품을 "三人을 균등히 하여 一人으로 삼는다."라고 정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법운은 『법화경의기』 권1에서 "法花는 因果를 갖고 宗을 삼는다. 안락행품 이전에서 開三顯一하여 因의 의미를 밝히고, 용출품 이후에서 開近顯遠하여 果의 의미를 밝힌다."라고 하여 도생의 설을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타무라시로우 박사는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과 성립사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제1부분(적문)과 제2부분(본문), 제3부분(후 6품)으로 나누고, 진리(법)-우주의 통일적 진리 · 인격(부처)-구원의 인격적 생명 · 인간(보살)-현실의 인간적 활동의 3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는가에 따라 법화 · 천태의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주장했다.[32]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분류 방법을 지양하고 행법의 측면에서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불탑 신앙

불탑 신앙은 서품 제1부터 수학무학인기품 제9까지 경의 전반 부분에서 중요시되고 있

31) 『法華經の成立と背景』, 成出版社, p481 참조.
32) 이영자 옮김, 『천태법화의 사상』, 민족사, pp.56~60.

다. 다만 견보탑품 제11과 여래수량품 제16 그리고 약왕보살본사품 제23에서는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을 동시에 설하고 있으나, 법사품 제10부터 촉루품 제22까지 경의 후반 부분에서는 주로 경권 신앙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화경의 내용은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것은 법화경의 특징이 일승사상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법화경은 일승사상을 전개하는 데에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먼저 불탑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전반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품 제1

범본과 묘법화의 서품 제1장행에는 삼매에 들어간 부처의 미간백호의 광명에 비친 동방의 일만 팔천 국토의 모습을 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불의 열반 후에 건립된 제불의 유골탑(dhātu-stūpa)들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법화경의 서곡은 불탑이 보이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국토에는 입멸한 위대한 제불들의 유골을 모신 보석으로 만든 탑이 있는 것도 모두 보였다."[33]

"또한 제불이 반열반한 뒤, 불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34]

그리고 범본 제43게~44게와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불사리를 공양하고 불탑을 건립하여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고 다음과 같이 각각 일치되고 있다.

"또한 나는 본다. 문수사리여, 입멸한 모든 선서의 교계에 따라 용맹심을 일으킨 많은 보살들은 모든 승자의 유골을 공양한다.// 항상 몇 천만의 국토를 장엄하고, 승자의 식자들에 의해 건립된 갠지스 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몇 천만억의 탑을 나는 본다.//" [35]

"문수사리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의 멸도 후에 사리를 공양하며, 또 불자가 모든 탑묘를 항하사와 같이 무수히 조성하여 온 나라를 장식하는 것을 본다."[36]

더욱이 범본 제45게와 제46게에는 장대한 불탑의 크기나 장식, 불탑 공양의 방법 등이 상설되어 있고,[37] 이어서 제47게에는 사리 공양과 불탑 건립이 성행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33) Wogihara and Tsuchida本, p.5.4~6行

34)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2b. : 復見諸佛 般涅槃後 以佛舍利 起七寶塔.

35) Wogihara and Tsuchida本, p.12.23~13.5行.

36)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3b. : 文殊師利 又有菩薩 佛滅度後 供養舍利 又見佛子 造諸塔廟 無數恒沙 嚴飾國界.

37) Wogihara and Tsuchida本 p.13.6~13行 :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3b : 寶塔高妙五千由旬 縱廣正等 二千由旬 一一塔廟 各千 幢幡 珠交露幔 寶鈴和鳴 諸天龍神 人及非人 香華伎樂 常以供養

표현하고 있다.

"선서의 식자들은 여기(이 세계)에서 승자의 유골에 이와 같이 공양한다. 이것들(탑)에 의해 시방은 마치 만 개의 산호수에 빛나는 것처럼 아름답다."[38]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문수사리여, 모든 불자들은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탑묘를 장식하니, 국계는 자연히 아름답고 묘하게 되어 천수왕이 꽃을 피움과 같다."[39]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84게[40]에 석가모니의 멸도 후에 사리를 분배하여 불탑이 많이 건립되었다고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이 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② 방편품 2

방편품 2의 제1단장행부터 제5단 게송까지는 불탑 신앙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제6단 게송 중 제78게~82게에는 불탑 건립, 제89게~93게에는 불탑 공양의 방식, 제95~96게에는 불탑 예배 순으로 불탑 신앙이 일승(eka-yāna)의 행법, 즉 성불의 행법으로서 체계적으로 설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탑 신앙이 바로 일승(성불)행이 된다는 뜻이다.

먼저 범본 제6단 게송의 제78~82게에는 불탑 건립이 성불행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입멸한 제불의 유골을 공양하려고 금은 및 수정의 보석으로 된 몇 천기의 탑을 건립한 사람들,//78// 또한 에메랄드나 혹은 묘청석과 진주로 만들고, 찬란한 유리나 사파이어 탑을 건립한 사람들, 그들 모두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79// 또한 대리석이나 전단, 혹은 심향의 탑을 건립한 사람들, 또 천목수나 종종의 목재로 탑을 건립하는 사람들,//80// 환희심을 일으켜 제불을 위해 연와로 만들거나, 또 진흙을 쌓아 탑을 건립한 사람들, 그 때문에 산림이나 황야에 토루를 쌓은 사람들도,//81// 유희할 때 여기저기에 작은 돌로 산을 만들어 제불을 위해 탑으로 하는 아이들,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다.//82// "[41]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불이 멸도한 후 사리를 공양하는 자여 만억 종의 탑을 일으키고, 금 · 은 · 파리 · 자거 마노 · 매괴 · 유리 · 진주로 청정하게 널리 장식하고 모든 탑을 아름답게 꾸미고, 혹은 돌로 탑묘를 일으키되 전단향과 침수향목과 목밀향목이거나 다른 재목과 병행하여 벽돌이나 기와 진흙으로 만들며, 만약 황야 가운데에 흙으로 쌓아 부처님의 묘를 만들며, 또는 아이들이 놀

38) Wogihara and Tsuchida本p.13.14~17行

39)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p.3b.: 文殊師利 諸佛子等 爲供舍利 嚴飾塔廟 國界自然 殊特妙好 如天樹王 其華開敷. Wogihara and Tsuchida本, p.24.18~21行

40)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p.5a : 佛此夜滅度 如薪盡火滅 分布諸舍利 而起無量塔.

41) Wogihara and Tsuchida本, p.47. 5~25行

때 모래로 불탑을 만들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불도를 성취하게 된다."[42]

그리고 범본 제89~93게에는 불탑 공양의 방법으로서 향이나 화환, 악기의 연주나 찬불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불탑 공양이 바로 성불행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 여래들의 유골에, 혹은 탑에, 혹은 진흙상에, 또 벽에 그려진 상에, 진사의 탑에 꽃이나 향을 바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43]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도 다음과 같이 범본과 일치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탑묘에 있는 보석상이나 그려져 있는 상에 향이나 꽃, 번개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며…… 모두 다 불도를 성취함이라……"[44]

다음으로 범본 제95게~96 게송에는 불탑 예배가 그대로 성불행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탑에 합장할 뿐이라도 그것이 완전한 형태이며, 참으로 한 손을 올릴지라도, 또 참으로 한순간 머리를 숙일지라도, 또 다만 한 번 신체를 굽힐 뿐이라도, 유골이 안치된 장소에서, 부처에게 예배를 올린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산란한 마음으로 한마디만 말해도, 그들은 모두 이 최승의 깨달음을 얻는다."[45]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혹 어떤 사람이 예배하되, 다만 합장만 할지라도, 또는 한 손만 올릴지라도, 혹 머리만 조금 숙여서……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묘 가운데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불' 이라고 불러도 다 불도를 성취한다."[46]

이상과 같이 방편품 2 제6단 게송의 과거불장에는 차례로 사리 공양을 위한 불탑 건립, 불탑 공양, 불탑 예배의 방식이 설해져 있다. 이처럼 제6단 게송에만 일승의 행법으로서 불탑 신앙에 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제6단장행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후세에 법사품 10 이하 제2류의 법화경이 성립되면서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서품 1에서 수학무학인기품 9까지 제1류의 법화경에는 게송 부분이 먼저 성립되었고, 장행 부분은 나중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중복해서 재차 장행에 설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법사품 10 이하 제2류의 법화경은 불탑 신앙을 지양하고, 오히려 경권 신앙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저작되었던 것이므로 불탑 신앙을 설한 게송 부분이 제2류의 법화경이 성립되면서 삽입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단지 삽입되었다고 보는 게

42)『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8c.: 諸佛滅度已 供養舍利塔 起萬億種塔 金銀及頗梨 車渠與馬腦… 乃至童子戲 聚沙爲佛塔 如是諸人等 皆已成佛道.

43)Wogihara and Tsuchida本, p.49.2~13行.

44)『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9a : 若人於塔廟 寶像及畫像 以華香幡蓋 敬心而供養 皆已成佛道.

45) Wogihara and Tsuchida本, p.50.4~11行.

46)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9a. : 惑有人禮拜 惑復但合掌 乃至擧一手 惑復小低頭… 若人散亂心 入於塔廟中 一稱南無佛 皆以成佛道.

송은 아마 제83~89게[47]와 제94게[48] 가운데 불상이나 회화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은 간다라미술의 영향을 받아 불상이나 회화 조성이 성행한 서기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49] 사이에 걸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방편품은 일승의 행법으로서 불탑 건립과 불탑 공양의 방식, 그리고 불탑 예배의 순으로 불탑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비유품 3

비유품 3에는 사리불의 성불 수기와 '삼계화택' 비유가 설해져 있으나, 불탑 신앙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사리불은 미래세에 무량 제불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고 보살행을 닦아 화광여래가 되는 수기를 받는데, 이 여래가 멸도한 뒤 정법시대가 지나고 상법시대가 도래할 때, 화광여래에 대한 사리 숭배가 범본 제31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정법이 멸하고 상법이 32소겁 동안 존속할 것이다. 그 성자의 유골은 모든 방면에 분산되어, 인간과 천신 중에게 항상 숭배될 것이다."[50]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 비유품 3 제2단 게송에도 "정법이 이미 멸하고 상법의 32소겁 동안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하늘이나 인간들이 다 널리 공양하리다."[51]라는 사리 숭배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단편적이나마 사리 숭배가 언급되고 있으므로 비유품 3은 불탑 신앙을 설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④ 수기품 6

수기품 6에는 마하가섭, 수보리, 대가전연, 대목건련의 4대 성문에 대한 작불수기가 설해져 있는데, 대가전연과 대목건련은 불탑 신앙에 의해 작불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신해품 4와 약초유품 5에는 각각 '장자궁자의 비유'와 '삼초이목의 비유'가 설해져 있고, 불탑 신앙에 관한 기술은 없을지라도, 수기품 6의 도입부로 설해져 있으므로 이 두 품이 불탑 신앙과 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묘법화의 신해품 4에는 다음과 같이 불탑 신앙을 권장하고 있다.

47) Wogihara and Tsuchida 本, pp.48.1~49.5行.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p.8c~9a : 若人爲佛故 建立諸形像… 寶像及畵像 以華香幡蓋 敬心而供養.

48) Wogihara and Tsuchida本, pp.49.22~50.3行. 『妙法蓮華經』 卷 第1, 大正藏 9, pp.9a : 若人散亂心 乃至以一華 供養於畵像 漸見無數佛.

49) 高田修著, 『佛像の起源』, 昭和 2년, p.231 참조.

50) Wogihara and Tsuchida本, pp.67.4~6行.

51) 『妙法蓮華經』 卷 第2, 大正藏 9. pp.12a. : 正法滅盡已 像法三十二 舍利廣流布 天人普供養.

"우두전단향과 모든 진귀한 보물로 塔廟를 일으킨다."[52]

하지만, 이에 상당하는 범본 제57게에는 분명히 '비하라'[53]로 나타나 있다. '비하라'는 엄격히 '정사(精舍)'나 '승방(僧房)'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법화에는 '옥실(屋室)'[54]로 나타나 있으며, 첨품법화에는 묘법화와 동일하게 '탑묘(塔廟)'[55]로 번역되어 있다. 더욱이 라집은 범본의 '비하라'[56]를 '탑사(塔寺)'[57]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정법화[58]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비하라'는 묘법화에서는 대부분 '승방'[59]이나 '정실',[60] '정사'[61]나 '방'[62]으로 해석하고, 정법화에는 '정사'[63]나 '강당정사(講堂精舍)'[64]로 나타나 있으므로 '비하라'는 '승방'이나 '정사'를 의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해서 라집이 '수투파(塔)'와 '비하라(精舍)'를 명백히 구분해서 해석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투파'에는 '비하라'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라집은 '비하라'를 '탑묘'나 '탑사'로도 해석했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신해품 4나 약초유품 5는 불탑 신앙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불탑 신앙을 설하고 있는 수기품 6의 도입부로 설해져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신해품 4와 약초유품 5는 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도 좋다. 특히 수기품 6에는 불탑 신앙이 제4단장행과 게송, 제5단장행과 게송에 중복해서 설해져 있는데, 이 중에 게송 부분만 보면 제26게~27게는 대가전연, 그리고 제32~33게는 대목건련의 성불 수기와 관련해서 불탑 건립이나 불탑 공양이 설해지고 있다.

전자는 "그(가전연)는 이 세상의 지도자인 그들(제불)을 여러 가지로 숭배하고, 그들이 열반한 뒤에는 탑을 건립하고 꽃과 향으로 공양할 것이다.// 그는 최후의 화신을 청정한 국토에 나투어 부처가 되리라. 이 지혜를 충만케 한 나머지 수천만억의 인간들에게도 제시할

52) 『妙法蓮華經』 卷 第2, 大正藏 9, p.18c~19a : 牛頭栴檀 及諸珍寶 以起塔廟.
53) Wogihara and Tsuchida本, p.112. 8行. 범본에 '비하라'란 말은 수십여 차례나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예는 동경대학 영우회(靈友會)에서 발간한 『梵藏漢 法華經原典總索引』 '第Ⅰ Ⅹ 分冊, 1991년 6月 30日, p.949'에 수록되어 있다.
54) 『正法華經』 卷 第3, 大正藏 9, p.83a.
55) 『添品法華經』 卷 第2, 大正藏 9, p.151c.
56) H.Kern and B.Nanjio本,p.274,Wogihara and Tsuchida本 p.233. 20行.
57)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6c. 23行. 『添品法華經』 卷 第4, 大正藏 9. p.171b
58) 『正法華經』 卷 第6, 大正藏 9, p.107a.
59) 大正藏 9, p.3b.12行, 45c. 6行, 46c. 1行, p.47b. 23行.
60) 大正藏 9, p.25b.5行, 26c. 11行
61) 위의 책 卷9, p.45a.6行
62) 위의 책 卷9, p.37a.29行
63) 『正法華經』 卷 第8, 大正藏 9, p.117a. 23行.
64) 『正法華經』 卷 第8, 大正藏 9, p.119a. 6行.

것이다."[65]라고 가전연의 작불수기와 관련하여 불탑 건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의 수기품 제4단 게송에도 "제불을 공양하고 제불이 멸도한 후 칠보탑을 일으켜 또한 화환과 향으로 사리를 공양하고, 그 최후신에 불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룬다. 국토는 청정하게 하고 무량한 만억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66]라고 범본과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그들(제불)의 광대하며 뛰어난 정법을 수천만억 겁 동안 보호·소지하고,/ 이 제불들이 입멸한 후에는 그들의 탑에 그(목건련)는 공양할 것이다.// 그는 이 뛰어난 제불들을 위해 보탑을 건립하고 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제불들에게 화환과 향을 올리고 음악 연주로 공양한다.//"[67]라고 설해져 있다.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무량겁에 있어서 불법을 받들어 지니고, 제불이 멸도한 후에 칠보탑을 일으키고 긴 금찰을 붙이고, 화환과 향과 기악으로써 제불의 탑묘에 공양하고,"[68]라고 목건련의 작불수기와 관련하여 불탑 건립과 공양을 설하고 있다.

⑤ 오백제자 수기품 8

오백제자 수기품 8 이전의 화성유품 7에는 '화성의 비유'와 대통지승여래, 그리고 16왕자의 과거 인연담이 설해져 있을 뿐, 불탑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하지만 화성유품 7은 곧 바로 오백제자 수기품 8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이 두 품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백제자 수기품 8에는 부루나와 오백 성문제자에 대한 성불 수기와 함께 '繫寶珠의 比喩'가 설해져 있는데, 부루나가 미래세에 법명여래가 되어 이 여래가 열반한 후 "칠보탑이 그 국토에 편만한다."[69]라고 하여 범본과 묘법화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무학인기품 9에는 아난과 라훌라, 2천 학무학의 성문제자에 대한 작불수기가 설해져 있다.

이상과 같이 법화경의 전반 부분의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전반 부분은 일승사상의 전개로서 성문제자에 대한 작불수기가 차례로 설해지고 있으나, 미래세에서 보살행에 대한 전제로 설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법화경은 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화경에서 보살행은 바로 불탑 신앙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화경이 일승의 행법을 불탑 신앙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65) Wogihara and Tsuchida本, p.137,12~19行.

66) 『妙法蓮華經』 卷 第3, 大正藏 9, p.21c. : 供養諸佛 諸佛滅後 其七寶塔 亦以華香 供養舍利 其最後身 得佛智慧 成等正覺 國土清淨 度脫無量 萬億衆生.

67) Wogihara and Tsuchida本, p.139.8~15行.

68) 『妙法蓮華經』 卷 第3, 大正藏 9, p.22a. : 於無量劫 奉持佛法 諸佛滅後 起七寶塔 長表金刹 華香伎樂 而以供養 諸佛塔廟.

69) Wogihara and Tsuchida本, p.179.3~4行 : ratna-mayai ca st pai sa loka-dh tu sphu bhavi yati.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26a : 佛滅度後 起七寶塔 遍滿其國.

따라서 전반 부분의 내용은 일승의 행법인 불탑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경권 신앙

법화경의 내용 구성은 법사품 10 이전까지는 불탑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법사품 10 이하부터는 경권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다. 법사품 10이하에서는 불탑 신앙의 모태인 '수투파'의 건립이나 공양을 지양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경권 신앙의 모체인 'caitya(支提, 制多 ; 이하 제다로 표기)'의 건립과 공양, 그리고 경권 신앙의 5행법이나 4행법과 3행법 등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다'의 건립이나 공양도 경권 공양의 일종이지만, 먼저 법사품 이하에서 '제다'의 건립이나 공양을 권장하고 있는 예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다(caitya)'의 건립과 공양의 권장

범본의 법사품 10 제2단장행에 "또 약왕이여, 어떠한 땅에서 이 법문이 말해지거나, 교시되거나, 서사되거나, 암송되거나, 집지된다면, 그 땅에는 약왕이여,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보석으로 만든 여래의 지제를 건립해야만 하며, 그 가운데 여래의 사리를 안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거기에는 여래의 전신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땅에서 이 법문이 말해지거나, 교시되거나, 독송되거나, 집지되거나, 서사되거나, 서사된 경권(pustaka)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또 탑에 대한 것과 같이 공경 · 존중 · 숭배 · 공양 · 찬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일체의 花環 · 香木 · 香水 · 華蔓 · 香油 · 香粉 · 衣服 · 傘蓋 · 幟幡 · 旗 等을 헌납하고, 일체의 가곡 · 음악 · 무용 · 악기 · 합창 · 합주로 공양해야 한다./ 또한 약왕이여, 이 여래의 지제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보는 중생들은 모두 무상등정각에 가까움을 알아야 한다./ "[70]라고 제다의 건립이나 공양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 법사품 10 제2단장행에도 다음과 같이 범본과 일치되어 있다.

"약왕아, 곳곳마다 혹은 설하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쓰며 혹은 경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다 응당 칠보탑을 일으키되, 매우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고 또 사리를 안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탑에 응당 일체의 꽃과 향과 영락과 증개 · 당번 · 기악과 노래로서 공양 · 공경 · 존중 · 찬탄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들은 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가까움을 마땅히 알라."[71]

이처럼 법사품 10에서는 이전에 권장해왔던 'dhātu(유골)'를 안치한 탑의 건립이나 공

70) Wogihara and Tsuchida本, p.201.13~27行.

71)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1b~c. : 藥王. 在在處處. 若說若讀若誦若書. 若經卷所住處. 皆應起七寶塔極令高廣嚴飾. 不須復安舍利. 所以者何. 此中已有如來全身. 此塔應以一切華香瓔珞繒蓋幢幡伎樂歌頌. 供養恭敬尊重讚歎. 若有人得見此塔禮拜供養. 當知是等皆近阿 多羅三 三菩提.

양을 지양하고, 여래의 전신(全身)인 경권(pustaka)을 안치한 제다의 건립과 공양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본은 사리를 안치한 '수투파'와 경권을 안치한 '제다'의 구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사품 이전에서는 모두 유골을 안치한 수투파를 설했는데, 바로 법사품에서는 경권을 안치한 '제다'를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묘법화에는 '제다'와 '수투파'가 그냥 탑으로 해석되어 있으므로 둘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문장의 의미에서 범본과 묘법화가 다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라집이 두 가지를 모두 탑으로 해석했을지라도, 그 의미는 묘법화와 범본이 동일하다. 따라서 법사품 이전에서는 불탑 신앙을 권장하지만, 법사품부터는 불탑 신앙의 지양과 함께 경권 신앙으로서 '제다'의 건립과 공양을 권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별공덕품에도 불탑 신앙으로서 '수투파'의 건립이나 공양을 지양하고 경권 신앙으로서 '제다'의 건립이나 공양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다'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범본 제3단장행에 "아지타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머물고 앉고 가는 곳에는 아지타여, 여래를 위한 제다(caitya)가 건립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여래의 스투파이다.' 라고, 제천을 위시해서 세간사람들이 말해야만 한다.//"[72]라고 나타나 있다.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앉거나 혹은 서거나 혹은 가는 곳이면 여기에 응당 탑을 세울지니,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다 응당 부처님의 탑과 같이 공양하리라."[73] 라고 '제다'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범본 여래신력품 제1단장행에 "어떠한 장소(토지)라도 선남자여, 이 법문이 독송되거나, 해설되거나, 교시되거나, 서사되거나, 생각되거나, 말해지거나, 음송되거나, 혹은 경권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유원이거나, 승원이거나, 집이거나, 산림이거나, 도시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누각이거나, 암실이거나, 동굴이거나, 그 장소에 여래를 위한 제다가 건립되어야만 한다.//"[74]라고 설해져 있다.

묘법화 여래신력품 제1단장행에 "어떤 국토에서 만일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설함과 같이 수행하며, 만약 경권이 머무른 곳이 혹은 원중이거나, 혹은 숲속이거나, 혹은 나무 아래거나, 혹은 승방이거나, 혹은 백의의 집이거나, 혹은 전당이거나, 혹은 산의 계곡과 광야일지라도, 이 가운데 모두 탑을 세우고 공양할지니라."[75]라고 범본이나 묘법화에서 동일하게 제다의 건립과 공양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법사품 이하 후반 부분에

72) Wogihara and Tsuchida本, p.288. 26~39行.

73) 『妙法蓮華經』 卷 第5, 大正藏 9, pp.43c~44a. : 阿逸多. 是善男子善女人. 若坐若立若行處. 此中便應起塔. 一切天人皆應供養如佛之塔.

74) Wogihara and Tsuchida本, p.330. 26~331.3行.

75) 『妙法蓮華經』 卷 第6, 大正藏 卷9, p.52a. : 所在國土. 若有受持讀誦讀誦解說書寫如說修行. 若經卷所住之處. 若於園中. 若於林中. 若於樹下. 若於僧坊. 若白衣舍. 若在殿堂. 若山谷曠野. 是中皆應起塔供養.

서는 불탑 신앙으로서 '수투파'의 건립이나 공양을 지양한 반면에 경권 신앙으로서 '제다'의 건립이나 공양을 권장하고 있다.

② 경권 신앙의 행법

법화경은 법사품 이하에서 경권 신앙으로서 제다의 건립을 권장하는 동시에 경권 신앙의 5행법이나 4행법, 그리고 3행법을 강조하고 있다. 경권 신앙의 5행법은 한역 경전에서 수지 · 독 · 송 · 해설 · 서사의 5종을 지칭한다. 반면에 범본에서는 독과 송을 함께 묶고 여기에 공양 · 첨부하여 경권(pustaka)의 수지(dhārakā) · 독송(vācana) · 해설(prakāśanā, 선설; deśakā) · 서사(likhitvā) · 공양(pūjanā)을 말하며, 4행법은 5행법에서 공양을 제외한 수지 · 독송 · 해설 · 서사, 3행법은 4행법 중에서 서사를 제외한 수지 · 독송 · 해설의 형태를 말한다. 물론 제다의 건립도 경권 공양의 일종이지만,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별도로 고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 경권 신앙의 행법을 설하고 있는 각 품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행법	법사품 10, 견보탑품 11, 권지품 13, 안락행품 14, 종지용출품 15, 분별공덕품 17, 여래신력품 21.
4행법	법사공덕품 19
3행법	상불경보살품 20

이처럼 법화경은 법사품 10 이전의 전반 부분에서 강조해왔던 불탑 신앙을 법사품 10 이하의 후반 부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경권 신앙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경전의 성격상 법화경의 특징이 일승사상이므로 일승의 행법으로 이행도인 불탑 신앙을 설한 뒤, 당연히 경권 신앙을 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승이란,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불의 가르침만이 진실이라는 의미이다. 법화경이 엄격한 계율을 설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선인이나 악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일체 중생을 성불(일승)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출세의 근본 목적이므로 누구라도 행하기 쉬운 이행도를 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사품 10 이하에서 이행도로서 경권 신앙을 역설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사품 10 이하에서 불탑 신앙의 지양과 함께 경권 신앙을 역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야경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소품반야경권』 제3에는 "般若婆羅密을 書寫하고 受持하고 讀誦하고 供養하고 恭敬하고 尊重하고 讚歎하라. 好花香 · 瓔珞 · 塗香 · 燒香 · 末香 · 雜香 · 繒蓋 · 幢幡으로 供養하라."[76]라고 경권의 서사 · 수지 · 독송 · 공양을 설하고 있다. 또한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경권 신앙의 5행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76) 『道行般若經』 卷 第3, 大正藏 卷8, p.432b. 『小品般若經』 卷 第3, 大正藏 卷8, p.542c

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묘법화에 "만약, 또 어떠한 사람이 묘법화경의 한 게송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 경권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과 같이 하고, 종종의 화환 · 향 · 영락 · 말향 · 도향 · 소향 · 증개 · 당번 · 의복 · 기락으로 공양하고 내지 합장 공경한다면"[77]라고 경권 신앙의 5행법인 수지 · 독송 · 해설 · 서사 · 공양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반야경과 법화경에 기술되어 있는 경권 신앙의 사례를 열거해 보았는데, 반야경에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3아승지겁에 의한 난행도이므로 일반 서민을 반야경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행도로서 경권 신앙을 설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야경에는 경권의 해설만 빠져 있을 뿐, 그 외는 법화경의 법사품에서 설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경권 신앙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화경의 법사품 이하에서 역설한 경권신앙은 반야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승과 소승 양측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화경은 전반 부분에서 일승의 행법으로서 불탑 신앙에 의해 성문제자의 작불수기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의 작불을 용이한 것으로 설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승의 작불을 인정하지 않거나 3아승지겁에 걸친 난행도의 보살 수행을 강조하는 대승교단에게서 강도 높은 공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법화경과 같은 신흥교단에서 감히 성문교단의 상수로 간주되는 부처의 직제자들에게 차례로 작불수기를 부여함으로써 소승교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범본의 법사품 제11게에 "최고의 경전(법화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홍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비방하는 자의 죄보는 더 무겁다고 나는 단언한다.//"[78]라고 법화경의 신봉자에 대한 박해에 대해 설하고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의 법사품 10 제1단 게송에도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는 자에게 잠깐이라도 악한 말을 하면, 그 죄는 그보다 더하니라."[79] 라고 범본과 일치되어 있다. 또한 묘법화의 법사품 10 제2단장행에도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어 설하지 않음은 이 경은 여래가 있는 현재에도 원망과 질투가 많거늘, 하물며 멸도한 후에랴."[80]라고 법화경에 대한 박해가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법화경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이미 법사품 10 이전의 비유품 제3에도 범본이나 묘법화와 동일한 의미로서 수십 회에 걸쳐 설하고 있다. 특히 범본의 비유품 3 제113게에 "내가 재세중이거나 혹은 입멸한 후에라도 이러한 경전을 버리고,/ 혹은 승려들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받는 과보를 너는 들어라.//"[81]라고 나타

77)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0c. : 若復有人, 受持讀誦解說書寫妙法華經乃至一偈, 於此經卷敬視如佛, 種種供養華香瓔珞末香塗香燒香繒蓋幢幡衣服伎樂, 乃至合掌恭敬. Wogihara and Tsuchida本, p.197.16~22行

78) Wogihara and Tsuchida本, p.200. 3~6行.

79)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1b : 其有讀誦持 是法華經者 須臾加惡言 其罪復過彼.

80)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1b : 從昔以來未曾顯說, 而此經者, 如來現在猶多怨嫉, 況滅度後.

81) Wogihara and Tsuchida本, pp.88. 25~89.2行.

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서도 "혹은 부처님이 재세하거나 멸도한 후에 이 경전을 비방하고, 이 경을 독송하고 수지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천대하거나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으면, 이 사람이 받는 과보를 너는 지금 들어라."[82]라고 범본과 동일하게 설하고 있다. 이처럼 법화경과 그 신봉자들은 법사품 10 이전에도 대승과 소승 양측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법사품 10 이하에서 경권 신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동시에 법화경 수지자나 설법자인 법사도 공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범본의 법사품10 제1게~2게에 "부처의 경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불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이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공경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 하고 여래의 경계를 원하는 사람은 이 경전을 수지해야 한다./ 혹은 또 이 경전의 수지자를 공경해야만 한다.//"[83]라고 법화경의 수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법화경의 수지자를 공경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에도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려고 하면, 항상 마땅히 권하여 법화경의 수지자를 공양해야만 한다. 그렇게 빨리 일체종지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이 경전을 수지하고 아울러 수지자를 공양해야만 한다."[84]라고 법화경의 수지를 권장하고, 법화경의 수지자까지도 공양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고 묘법화 법사품 10 제2단장행에는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여래의 방에 들어가서,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이에 응해서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경을 설할지니라."[85] 라고 법화경 설법자로서 법사의 역할도 중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법화경이 법사품 이하에서 경권 신앙을 역설한 것은 대승과 소승의 혹독한 박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된다.

셋째, 일승사상을 설한 법화경을 부촉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법화경은 불멸 후의 대승경전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부처가 입멸을 맞아 설법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불멸 후 부처의 주처는 불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대신한 법사가 법화경의 설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사품 이전에는 부처가 설법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사품 이하에는 설법의 주체가 점차 법사로 바뀌고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설법자로서 법사가 주체가 된다면, 마땅히 붓다가 재세시에 일승을 설파했던 법화경을 소재로 설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인도 불교의 습성에서 볼 때, 일승사상은 혁신적인 사상에 속하므로 믿기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법사품에는 "부처가 설한 모든 경전 가운데 법

82) 『妙法蓮華經』 卷 第2, 大正藏 9, p.15b : 若佛在世 若滅度後 其有誹謗 如斯經典 見有讀誦 書持經者 輕賤憎嫉 而懷結恨 此人罪報 汝今復聽.

83) Wogihara and Tsuchida本, pp.198.27~199.1行.

84)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1a : 若欲住佛道 成就自然智 常當勤供養 受持法華者 其有欲疾得 一切種智慧 若有能受持 幷供養持者

85)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31c : 是善男子善女人, 入如來室, 著如來衣, 坐如來座, 爾乃應爲四衆廣說斯經.

화경이 제일이다."[86]라든가, "이 경은 제불의 비요의 장"[87]이라고 설했으며, 안락행품에도 "이 법화경은 모든 여래의 제일설이며 모든 설법 중에 가장 심심하다."[88]라든가, 여래신력품에 "여래 일체 소유의 법과 여래 일체 자재신력과 여래 일체 비요의 장과 여래 일체 심심의 일을 다 이 경전에 선시하고 현설했다"[89]라고 하여 법화경의 불가사의함과 함께 일승을 설한 법화경을 경권 신앙 형태로 부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사품 이하에서 불탑 신앙을 지양하고 갑자기 경권 신앙으로 급선회한 이유도 불멸 후 부처가 재세시에 설한 법화경을 부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법화경의 내용은 법사품 10을 기점으로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으로 이 양자는 일승의 행법이고, 후 6품의 내용은 일승사상의 인간적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법화경 전품이 방편품 2에서 개현한 일승사상의 구체적 전개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4.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몇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법화 제본 가운데 최고본은 묘법화의 범본 사본으로 추정된다. 대고중의 숫자를 비교해보아도 정법화보다 묘법화가 더 적을 뿐만아니라, 첨품법화에 의하면 정법화보다 120년 늦게 번역된 묘법화가 더 생략되고 빠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묘법화는 촉루품이 후 6품 이전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촉루품이 후 6품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 정법화보다 비교적 원형 법화경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최고본인 묘법화의 범본 사본은 150년경, 정법화의 범본 사본은 20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라집이 범본 사본을 번역할 때 묘법화에 제바달다품은 없었지만, 정법화의 견보탑품에는 제바달다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용수가 저술한 『대지도론』에도 원형 법화의 각 품들이 여러 번에 걸쳐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형 법화에 가까운 묘법화의 성립 시기는 용수가 탄생한 150년경으로 추정되고, 제바달다품이 견보탑품에 포함된 정법화의 범본 사본의 성립시기는 200년경으로 판단된다.

86)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 31b : 我所說諸經 而於此經中 法華最第一.
87) 『妙法蓮華經』 卷 第4, 大正藏 9, p. 31b : 此經是諸佛秘要之藏.
88) 『妙法蓮華經』 卷 第5, 大正藏 9, p. 39a : 此法華經. 是諸如來第一之說. 於諸說中最爲甚深.
89) 『妙法蓮華經』 卷 第6, 大正藏 9, p. 52b : 如來一切所有之法. 如來一切自在神力. 如來一切秘要之藏. 如來一切甚深之事. 皆於此經宣示顯說.

셋째, 제2류의 법화경 내용은 구성면에서 제1류 법화경에서 강조한 불탑 신앙의 지양과 함께 경권 신앙으로 급선회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이유는 반야경의 영향이나 부촉이나 전도의 일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대승과 소승의 박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전도를 선택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강도 높은 경권 신앙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화경의 일관된 사상은 일승사상이라는 점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일승은 성불의 가르침만이 진실이므로 누구라도 쉽게 성불할 수 있는 이행도로서 법화경의 내용은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대승불교의 대표적 이행도는 불탑 신앙과 경권 신앙 두 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견지에서 원형 법화의 내용도 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법화경의 내용 구성에는 별도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관점은 방편품에서 개현한 일승사상의 구체적 전개가 바로 법화경이라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